

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축구조설계용역의 개선방안

1. 건축구조설계용역 문제점

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은 건축설계와 구조설계, 설비설계, 소방설계, 전기설계, 정보통신설계, 조경설계, 부대토목 설계 등 총 8개 전문분야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.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설계 발주(공공, 민간 공통)는 건축사 중심의 건축설계 일괄 용역계약체계로 진행되어 건축설계 이외의 구조설계, 설비설계, 조경설계, 부대토목설계는 건축사의 하도급업무로 수행되어, 저가 하도급 용역 및 미수금 발생 등의 문제가 수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. 이는 건축물 설계에 참여하는 각 전문분야 기술사의 사기와 성과품의 질을 저하시키고,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의 전자 및 조선산업처럼 건축구조엔지니어링산업이 발전하는데 커다란 장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

최근 저탄소 녹색성장과 세계화, 개방화 및 지속성장 가능사업인 건축엔지니어링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축물 설계 각 전문분야의 독립된 업역 보장과 건축물 설계 용역의 공동계약을 통한 건축구조엔지니어링의 용역환경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, 이와 같은 용역환경이 이루어질 때 건축구조엔지니어링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.

2.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사항

(1) 건축 총공사비에서 구조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%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용역 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건축 총설계비에서 구조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%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는 구조계획 및 설계에 투입되는 Manpower의 절대적인 감소로 인하여 경제적인 구조설계가 될 수 없으며, 공사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최소 건축 총설계비에 10%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합니다.

(2) 건축구조설계 용역의 미수금 발생

- ① 구조설계를 완료하고도 1년 이상 구조설계비를 받지 못한 미수금이 용역금액의 약 31%가 되고 있습니다.
- ② 특히 계약상의 우월적 위치와 미수금을 이용하여 계약서 체결 없이 구조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



김승철 우리회 회장
(주)다원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

③ 따라서 건축사의 하청관계가 아닌 공동계약의 주체로 개선되어야 합니다.

3. 개선사항

- (1) 건축물설계 각 전문분야의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기술사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(2) 하지만 현실은 구조기술사사무소가 건축사사무소의 단순 하도급용역으로 전락하여 건축구조 엔지니어링 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.
- (3) 이와 같은 건축구조엔지니어링 용역환경 개선을 위해서 건축물설계에 대해 공동계약 방식이 이루어져야 하며, 또한 구조설계는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절실히 요청됩니다.

〈편집자주〉 본 원고는 2012년 12월호 건축학회지 ‘특집, 새 정부에 대한 건축계의 제언’에 기고된 글입니다.